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11. 1 선고 2016가합110268 판결 [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더부페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17. 9. 20.

판결 선고2017. 11. 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6. 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이 사건 사업과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

- 1) 피고 주식회사 B(대표이사: C, 이하 '피고 B'라 하고,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'주식회사' 기재를 생략한다)는 서울특별시(이하 '서울시'라 한다)가 시행하는 D 민간투자시설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A(대표이사: C)를 설립하였다.
- 2) 원고는 2010. 4. 28. 피고 B에 피고 A 설립자금 용도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, 피고 A 설립 및 서울시로부터의 사업권 획득이 완료될 경우 위 대여금으로 확보한 피고 B의 피고 A 지분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.
- 3) 피고 A는 2010. 11. 17. 서울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(이하 '이 사건 실시협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획득하였다.
- 4) 원고는 2010. 12.경 위 대여금 1억 원에 해당하는 피고 A 주식 2만 주(= 1억 원 ÷ 액면가 5,000원)를 취득하였다.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A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A 주식 10만 주를 받기로 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는 2011. 9. 30.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A의 기존 주주 한일티앤씨에 5억 원을 송금하였고, 2011. 10.경 한일티앤씨가 보유한 피고 A 주식 10만 주를 취득하였다.

나.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 체결

원고는 2013. 7. 1. 피고 A, 피고 B와 사이에,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피고 A 주식 합계 12만 주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약정(이하 '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서

1. 갑[피고 A]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, 을[피고 B]은 갑의 운영출자자이자 최대주주이며, 병[원고]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갑의 주식(12만 주, 액면가 5,000원, 총 6억 원)을 인수하여 그 지분을 출자한 투자자이다.
2. 갑은 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, 그 시점에 병이 인수하였던 위 주식 전량을 1주당 5,000원(총 6억 원)에 책임지고 매수할 것임을 확약한다.
3. 병은 갑에게 위 주식의 재매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, 갑은 병으로부터 위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식 전량을 매수하여야 한다.

4. 을은 갑의 위 2항 및 3항의 지분매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.

다.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

이후 투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 서울시가 2013. 10. 30.경 이 사건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9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6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였고, 위 대여 또는 투자금의 반환에 대비하여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을 체결하였다.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

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, 그 전제가 된 씨제이이앤엠의 100억 원 투자가 무산됨으로써 효력을 잃었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투자금 6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, 달리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도 없다.

3. 판단

앞서 든 증거, 갑 제10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피고 A(주채무자) 및 피고 B(연대보증인)에 대하여 투자금 6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 당시(2013. 7. 1.)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A에 합계 6억 원을 투자하여 12만 주를 보유한 주주 지위에 있었다.

②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 제2조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 A가 원고의 보유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책임지고 매수하는 내용으로, 원고의 투자금 회수를 피고들이 담보·보장하는 데에 목적이

있다.

- ③ 피고들의 대표이사는 C으로 동일하고, 피고 A는 C이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며, 피고 B는 피고 A의 운영출자자이자 최대주주이다. 피고 A 설립이나 이 사건 사업 추진, 이를 위한 원고 등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등도 모두 피고 B의 주도로 이루어졌다.
- ④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의 문언에 따르더라도,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피고 B가 원고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.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이 서울시의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로 무산되자, 원고는 새로운 사업주체를 물색하여 피고 A를 매각하는 차원에서 주주구성을 단일화하기 위해 2014. 4.경 피고 B에 이 사건 주식을 6억 원에 양도한 다음 피고 A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- ⑤ 위와 같은 약정 문언이나 회사들 간 지배구조, 투자경위, 사업추진방식, 후속 양도과정,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의 주식을 '책임지고 매수'하는 주체를 피고 A에 한정하여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이 자기주식 취득약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. 오히려 피고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투자금 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투자금회수약정이 자기주식 취득약정임을 전제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- ⑥ 피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이 씨제이이앤엠의 피고 A에 대한 100억 원 출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위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이 사건 실시협약서(을 제5호증) 별표3에는 씨제이이앤엠의 출자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.
- ⑦ C은 피고 A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면서 '원고는 실투자금 6억 원을 회수하고 빠진다는 원칙'이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(갑 제10호증의 2).

4. 결론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.

6. 3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재판장판사강화석

판사고유강

판사김준우